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대안)**

의 안 번 호	409
------------	-----

제안연월일 : 2011년 7월 7일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추진경위

- 가. 2010년 10월 29일 서울시장의 발의한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안」 과 2011년 6월 14일 박양숙, 김형식의원의 2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1호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기본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제231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1. 7. 7)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 나. 이상 2건의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하나의 조례안 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각각의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가. 최근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는 노인복지정책을 한데 아우를 수 있는 법적 준거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서울특별시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심신건강과 생활안정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나. 또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령화 문제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의 효과적인 실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 및 고령친화도평가제 등을 시행함으로써, 서울을 ‘고령친화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기본이념으로 보편적 복지 추구를 규정 함 (안 제2조).
- 나. 고령친화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등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 다.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 6조).
- 라.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 등에 관한 종류를 나열함 (안 제7조부터 제22조까지).
- 마. 고령친화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제정, 고령친화도 평가제 운영,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규정하고,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연구·개발하기 위해 노인정책센터 설립·운영 함 (안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 바. 서울특별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그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0조부터 제 37조까지).
- 사. 그 밖에 업무의 협조 및 경비지원 및 예산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8조부터 41조까지).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결국 모든 시민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결국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사회이다.

③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시 본청, 소속기관 및 자치구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과 그 밖의 노인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서울특별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 경우 이 조례 제2장(노인복지정책)에서 규정하는 각 조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장 노인복지정책

제7조(건강증진)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 건강검진 사업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7.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8.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노인건강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7조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노인의 건강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회·문화활동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시정모니터링단 운영, 노인문화예술단 운영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향상
2.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기타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고용촉진 및 소득 지원)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고령자기업, 고령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 저축 등 자산형성 지원
4. 고령자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5.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고령자 의무고용) ①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인 투자기관과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시에서 설립한 법인인 출연기관은 제1항의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매년 조사하고 발표하여야 한다.

제12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생업지원)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이 노인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노인복지주택의 공급) ① 시장은 노인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제16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고령친화적 설계 적용 임대주택 및 소규모 주택 공급, 주택개량 지원 등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① 시장은 노인의 권익 보호와 노인복지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노인으로 구성된 노인복지 ombudsman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노인복지 ombudsman의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등 권익 보호 강화
2.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경로우대)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
2. 노인전용극장 등 여가문화 사업
3. 노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4. 기타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19조(노인학대 예방)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4. 노인학대 관련 신고를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5. 노인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6. 기타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노인자살 예방) 시장은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위험 노인 및 자살시도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협력기관 지정 등 자살 위기 개입체계 구축
4. 노인자살 미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노인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6. 기타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노인의 날 행사)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 매년 10월 경로의 달,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에 행사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표창) ① 시장은 경로·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버이날 또는 노인의 날 등에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잘 모시는 시민, 학생, 노인관련 기관 등
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학교 및 단체 등
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학생·기관 등
4. 고령사회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5. 그 밖에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표창을 위한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제3장 고령친화도시

제23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구청장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고령친화도 평가제 및 고령친화영향평가) ①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 및 자치구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본청, 소속기관 및 자치구에서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책이 노인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통하여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2년 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국제교류의 활성화)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노인정책센터 설치·운영) ①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연구·개발하고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 노인정책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센터의 근무 직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제4장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제30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기본계획 등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복지건강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원,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법률·의료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32조(위원의 임기) 위원(委員)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補選委員)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의 남은 기간(剩餘期間)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公務員)의 임기는 그 직(職)에 재직(在職)하는 기간(期間)으로 한다.

제33조(해촉) 시장은 위원(委員)이 다음 각 호(號)의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中)이라도 해촉(解雇)할 수 있다.

1. 위원(委員)의 의무(義務)를 성실(誠實)히 수행(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職務)상 알게 된 비밀(秘密)을 누설(洩露)하거나 남용(濫用)할 때
3. 건강(健康) 등 일신상(一身相)의 이유로 위원(委員) 스스로가 해촉(解雇)을 원(願)할 때
4. 위원(委員)으로서 계속(계속) 활동(活動)하는 것이 부적당(不適當)하고 인정(認定)될 때

제34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委員長)은 위원회(委員會)를 대표(代表)하며 위원회(委員會)의 업무(業務)를 총괄(總括)하고, 부위원장(副委員長)은 위원장(委員長)을 보좌(輔佐)하며 위원장(委員長)이 부득이(不得已)한 사정(事情)으로 직무(職務)를 수행(수행)할 수 없는 때(時)에 그 직무(職務)를 대행(代辦)한다.

제35조(회의) ① 위원회(委員會)의 회의(會議)는 위원장(委員長)이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경우(場合)와 재적위원(在籍委員) 3분의 1 이상(以上)의 회의소집요구(會議召集要求)가 있을 때(時)에 위원장(委員長)이 소집(召集)한다.

② 위원장(委員長)이 회의를 소집(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會議召集日) 7일 전(前)까지 회의(會議)의 일시(日時)·장소(場所) 및 심의안건(審議案件)을 각 위원(委員)에게 서면(書面)으로 통지(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緊急)을 요(要)하거나 부득이(不得已)한 사유(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如此)하지 아니(不)하다.

③ 회의(會議)는 재적위원(在籍委員) 과반수(過半數)의 출석(出席)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出席委員) 과반수(過半數)의 찬성(贊成)으로 의결(議決)한다.

④ 회의(會議)에 참석(參事)한 위원(委員) 및 의견진술(意見陳述)을 위하여 출석(出席)한 전문가(專門家) 등(等)에게는 예산(豫算)의 범위(範圍) 안에서 수당(酬當)과 여비(旅費)를 지급(支給)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公務員)이 그 직무(職務)와 직접(直接) 관련하여 참석(參事)하는 경우에는 그러(如此)하지 아니(不)하다.

제3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委員會)는 필요(必要)한 경우(場合) 안전심의회(安全審議會)와 관련(相關)이 있는 시(市) 및 소속기관(所屬機關)의 공무원(公務員) 또는 전문가(專門家) 등을 회의(會議)에 출석(出席)하게 하여 의견(意見)을 듣(聽)거나 필요(必要)한 자료(資料)의 제출(제출)을 요청(要求)할 수 있다.

제37조(운영세칙) 이 조례(條例)에 규정(規定)한 사항(事項) 이외(以外)에 위원회(委員會)의 운영(運營)에 관(關)하여 필요(必要)한 사항(事項)은 위원회(委員會)의 의결(議決)을 거쳐 위원장(委員長)이 정(定)한다.

제5장 보칙

제38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0조(경비지원 및 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및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기업·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와 위탁의 방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